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28
----------	-----

2000년 7월 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0. 7. 3)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8건에서 새로운 매입사유가 발생하여 2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시내버스 부실업체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인수·합병이나 면허취소되는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어 있는 차고지를 우리시가 매입하여 부채 및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지원하고, 매입차고지는 인수업체 또는 기존 업체의 차고지로 사용허가(임대)코자 함.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4건
 - 토지(2) : 6필지 6,429.3㎡(1,945평)
 - 건물(2) : 2,602.85㎡(787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태 호)

가.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시내버스 구조조정

-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지하철 개통 등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버스 이용승객의 절대수요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버스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서비스공급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였으며, 버스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서비스공급으로 버스수요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의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서울시 버스회사 84개 업체 중 부실업체 20개 업체의 부채총액은 약 136억 원으로 추정되고, 체불임금은 경영양호업체가 업체당 평균 1억 8천 4백만원, 부실업체의 체불임금은 업체당 약 10억 3천 8백만원으로 부실업체 전체는 151억 8천 2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구조조정시 지원방안

- 부채상환에 충당할 수 있도록 시가 차고지를 매입(공시지가)
- 구조조정 업체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탕감
-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제세와 지방세 감면
- 합병에 따른 양수자금 용자
- 적자노선 인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 공영차고지 건설후 버스업체 임대 등이 있음.

○ 문제점

-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면허조건으로 최저 차량보유대수 40대 이상, 버스 1대당 법정차고지 36㎡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84개 업체 중 차고지를 확보한 업체는 66개 업체로 78%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차고지를 매입하여 법정차고지가 없는 업체에 임대할 경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고지를 확보한 업체와 형평성문제 및 기. 차고지를 갖고 있는 회사까지 차고지를 매각하고 시로부터 저렴한 임대료를 주고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려고 할 경우, 더

욱 더 차고지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시
는 계속해서 시비로 차고지를 확보해
주는 악순환이 일어날 우려가 예상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없음
- 6. 소위원회
미구성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628
----------	-----

제출년월일 : 2000. 6. 13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
에 의거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내용
 시내버스 부실업체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
진하기 위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인수·합병

이나 면허취소되는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
어 있는 차고지를 우리시가 매입하여 부채
및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지원하고, 매입차
고지는 인수업체 또는 기존 업체의 차고지
로 사용허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4건
 - 토지(2) : 6필지 6,429.3㎡(1,945평)
 - 건물(2) : 2,602.85㎡(787평)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시내버스 부실업체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
기 위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인수·합병이나 면
허취소되는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차고지를 우
리시가 매입하여 부채 및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지원하고, 매입차고지는 인수업체 또는 기존
차고 부족업체의 차고지로 사용 허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
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
정에 의거 의결한다.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4건
 - 토지(2) : 6필지 6,429.3㎡(1,945평)
 - 건물(2) : 2,602.85㎡(787평)
- ※건물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위에 있는
건물임.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 요약

구분		건수	면적(㎡)	금액(천원)	세부사항	
취득	매입	계	4	9,032.15	10,202,299	
		토지	2	6,429.3	9,773,729	건물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위에 있는 건물임.
		건물	2	2,602.85	428,570	

(다음 페이지에 계속)